



'23.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

주민센터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



노인일자리 참여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

-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으나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대상자가 신청안내를 받을 수 없으며,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노인일자리로 참여한 곳에서 '근로소득 지급확인서' 등을 받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증빙제출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1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
1 ARS (자동응답) 전화

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
2 QR코드

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 » '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' 연결 »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» 지급방법(계좌 또는 현금) 입력 » 신청완료

3 홈택스(모바일앱)

앱스토어(구글Play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홈택스(모바일앱) 설치 » 신청/제출 » 반기신청
»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» 지급방법(계좌 또는 현금) 입력 » 신청완료

4 홈택스(PC)

www.hometax.go.kr 접속 » 세무업무별 서비스 » 반기신청 »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» 지급방법(계좌 또는 현금) 입력 » 신청완료

2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
국민비서·전자문서·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'신청하기' 버튼 누름
» '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' 연결 »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» 지급방법(계좌 또는 현금) 입력
» 신청완료

*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
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
- 1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에서 장려금 안내대상 여부 및 미안내사유 확인
- 2 홈택스(PC, 모바일앱) :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진행

근로장려금이란?
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**저소득 가구**에 근로·사업·종교인 **소득에 따라** 산정된 **근로장려금**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반기신청제도

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**반기별 소득**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합니다.

구 분		소득발생	신청기간	지급기한	지급액
선택 ¹⁾	반기신청 ²⁾	'23년 상반기	'23.9.1.~ 15.	'23년 12월 말	예상 연간산정액의 35%
		'23년 하반기	'24.3.1.~ 15.	'24년 6월 말 ³⁾	(정산)연간산정액 - 12월 지급액
	정기신청	'23년 연간	'24.5.1.~ 31.	'24년 8월 말	연간산정액의 100%

- 1)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으며, 둘 중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2) 반기신청 시 상반기(9월) 또는 하반기(3월)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. (9월 신청 시 다음 해 3월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)
- 3) 반기신청자가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해 6월말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.

신청요건

2023년 **근로소득만**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**가구당 1명**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① 가구유형

2022년 12월 31일, 가구원 구성,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

단독가구	배우자와 18세미만 부양자녀*, 70세 이상 부양부모*가 모두 없는 가구
홀벌이가구	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(단 배우자 또는 신청인 중 한명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맞벌이가구	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*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,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

② 소득요건

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, '23년 근로소득(연환산)이 아래기준 미만인 경우

구 분	단독가구	홀벌이가구	맞벌이가구
근로장려금	2,200만원 미만	3,200만원 미만	3,800만원 미만

③ 재산요건

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*이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

* 재산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%만 지급합니다.

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동영상

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신청요건 및 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신청요건



안내대상여부



안내자 신청방법



미안내자 신청방법

